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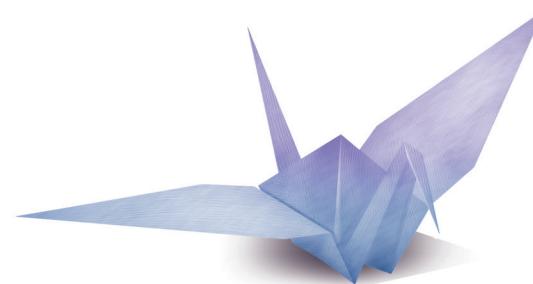
당신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2014

2014
지금 힘이든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미세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Guide Book 2014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당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일자리 정보까지 언제든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통합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복지 관련 상담과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07 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각종 문의에서 쇼핑, 병원진료 예약, 구직, 회사 업무 통화, 가족, 친구와의 연락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 드립니다.

일모아(www.ilmoa.go.kr)

청년실업대책, 사회적일자리, 취약계층 및 직업훈련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www.worknet.go.kr)

국가 취업포털 사이트로 일자리 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 등 다양한 고용정보로 취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힘들 땐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하세요

이 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쉽고 친절한 복지서비스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보시거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책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1

어려운 일, 혼자 헤쳐 나가려 하지 마세요

빈곤, 실직과 사업실패, 장애와 고령, 갑작스런 사고와 건강 악화까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바로 곁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책은 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까이에 많은 복지서비스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 이 책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

목차를 보시면

전체 복지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이 책의 222p에 수록된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를
참고하세요.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면

「알려드립니다.」「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책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신청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주요기관 연락처는 231p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Guide Book 2014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3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333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14p), 긴급복지지원 제도(17p),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19~23p), 창업자금 지원(32p) 등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제도(40p), 취업성공패키지(41p), 근로장려금(46p), 내일배움카드(48p) 등

임신, 출산, 보육을 걱정하는 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62~64p), 보육 지원(70~74p), 방과후 돌봄(81~82p),
든든학자금대출(88p)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100p), 본인부담금 상한제(103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115p) 등

노후를 걱정하는 어르신

재정적인 도움을 비롯해,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초연금(118p), 노인일자리 지원(119p), 치아관리비용 지원(126~127p) 등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132p), 장애인직업능력개발(139p), 장애인활동 지원(155p) 등

이 밖에 다양한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 드립니다.

목차 Contents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13
1.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14
2.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17
3.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19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드립니다	19
넓고 불편한 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24
4.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28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28
꼭 필요한 자금을 빌려 드립니다	30
채무의 고통을 덜어 드립니다	35
5.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36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39
1.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40
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43
일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43
목돈 마련 및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44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48
3.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49
4.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50
5.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55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아이를 낳는 것도 걱정,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59
1.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60
2.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68
3.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70
4.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75
5.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80
6.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81
7.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83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83
다양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5
학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88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90
8.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91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91
청소년 보호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3
청소년의 경쟁력을 키워 드립니다	98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99
1.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100
2.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05
3.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109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111

목차 Contents

5.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13

6.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15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거리가 한들이 아니시죠? 117

1.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18

2.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19

3.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120

4. 치매가 걱정될 때 123

5. 어르신의 눈과 치아 건강이 걱정될 때 125

6. 어르신을 둘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128

7.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가 궁금할 때 130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31

1.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132

2.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134

3.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138

4.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139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드립니다 139

 일자리를 찾아 드립니다 143

5.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144

6.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148

7.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155

8.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16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9.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163

10.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165

국가를 위해 학생이나 공현을 하셨나요? 167

1.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168

보훈급여금을 드립니다 168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175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183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185

1.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186

다양한 형태나 상황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186

다문화 가족을 지원합니다 19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8

2.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201

3.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207

4. 남을 돋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212

5.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213

6.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216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222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231

대한민국 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주요사업 50

1. 기초생활보장 제도 (14p)
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16p)
3. 긴급복지지원 제도 (17p)
4. 장기전세주택 임대 (20p)
5.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21~22p)
6. 미소금융 (32p)
7. 문화누리카드 (37p)
8. 실업급여 제도 (40p)
9. 취업성공패키지 (41p)
10. 희망키움통장 (44p)
11. 근로장려금 (46p)
12. 내일배움카드 (48p)
13. 임신·출산 진료비 고운맘카드 (63p)
1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맘편한카드 (64p)
15. 출산 전·후 휴가급여 (69p)
16.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70p)
17. 가정양육수당 (71p)
18. 아이돌봄서비스 (72p)
19. 국가예방접종 (77p)
20. 초등돌봄교실 (81p)
21.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82p)
22. 청소년 방과 후 야카데미 (82p)
23. 국가장학금 (85p)
24. 든든학자금대출 (88p)
25. 건강보험 제도 (100p)
26.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02p)
27.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103p)
28.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04p)
29. 의료급여 제도 (105p)
30.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106~108p)
31. 건강검진 제도 (111p)
3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15p)
3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16p)
34. 기초연금 (118p)
35. 노인일자리 지원 (119p)
36. 치매검진 지원 (124p)
37. 노인틀니 지원 (126p)
38. 노인임플란트 지원 (127p)
3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130p)
40. 장애인연금 (132p)
41.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39p)
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143p)
43. 장애인 활동 지원 (155p)
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165~166p)
45.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186p)
4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교육비 지원 (188p)
4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90p)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97p)
49.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201p)
50.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 (214p)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활용함

*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4년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60만 3,403	102만 7,417	132만 9,118	163만 82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원/월)	193만 2,522	223만 4,223	253만 5,925	283만 7,62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마다 30만 1,702원씩 증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동에 거주하면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3년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

구분	3인가구 이하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금액(원/월)	460만 6,216	510만 2,802	535만 7,446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함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5만 6,984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일반 빈곤가구 및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와 개인

1.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2.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3.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4.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5.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4인 기준 월 163만원('14년)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확인한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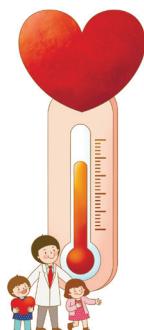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 재산(집, 자동차, 저축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가족 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60만 3,403	102만 7,417	132만 9,118	163만 82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원/월)	193만 2,522	223만 4,223	253만 5,925	283만 7,627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생계 급여	가구 소득수준 및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인기준 월 최대 132만원)
주거 급여	임차료, 주택 유지수선비 등 지급 (4인기준 월 최대 29만원)
교육 급여	초·중·고등학생에게 학비, 학용품비 등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 구입비(연 12만 9천원), 학용품비(연 5만 2천원) - 중 학 生: 부교재비(연 3만 8천원), 학용품비(연 5만 2천원) - 초등학생: 부교재비(연 3만 8천원)
해산 급여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장례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 급여	자활근로 참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자금대여 등 지원
의료 급여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지원 <small>☞ 의료급여 제도 참조(105p.)</small>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료 공제(월 150도수),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까지) •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월 1만 5천원까지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월 접속료 30% 감면	각 통신사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8천원)	한국전력(☎123)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 위기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②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기타
 - 이혼, 주소득자의 휴업 · 폐업 ·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경우
 - 그 밖에 자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주 하는 질문

●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先지원 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신속하게 우선 1개월을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이 적정한 경우 연장하여 추가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월 244만원) 이하
 ※ 단,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월 196만원) 이하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2. 지원내용

- 각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08만원(4인기준/1회)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1회)	최대 2회
주거 지원	59만원(대도시, 4인기준/1회)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원(4인기준/1회)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0만 5천원, 중학생 32만 6천원, 고등학생 39만 9천원 및 수업료·입학금(1회)	최대 2회
연료비 지원	8만 8천원(10월~3월, 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쌍둥이 12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최대 6회

※ 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 신청(☎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드립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과 일반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 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지방공사, LH공사(☎1600-1004)

국민임대 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4인기준 35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지방공사, LH공사(☎1600-10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공공임대 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10년간 임대 후 분양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지방공사, LH공사(☎1600-1004)

장기전세주택 임대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LH공사 신청(☎1600-100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기준 255만원) 이하이며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7,500만원, 광역시 최대 5,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4,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수도권에서 전세금 7,5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보증금 375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간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LH공사 신청(☎1600-10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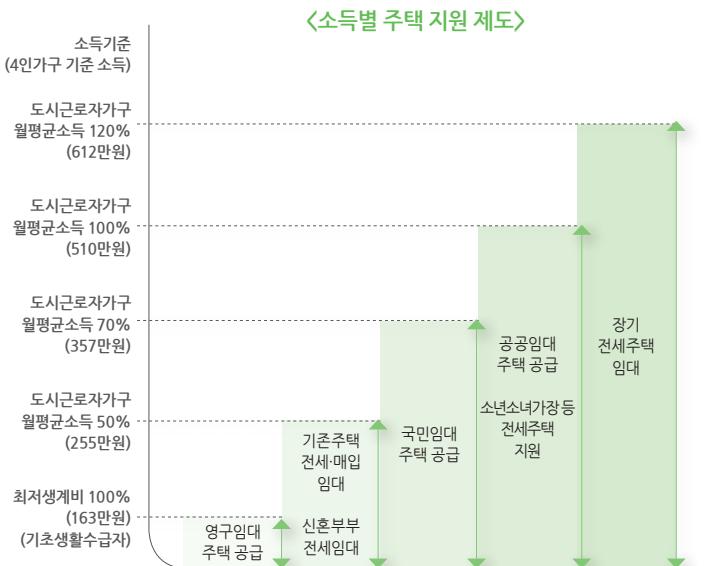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LH공사(☎1600-1004) 신청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합니다.(최초 2년 계약)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LH공사(☎1600-1004) 신청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63만원)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LH공사(☎1600-1004) 신청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낡고 불편한 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약자 개량 자금 지원(융자)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
- 위의 가구에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2. 지원내용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지체장애 시 최대 8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우리은행 문의 후 신청(☎1588-5000)

주거환경 개선 지원(융자)

1. 지원대상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지원내용

주택개량비용을 연 2.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우리은행(☎1588-5000), 국토교통부(☎1599-0001)
문의 후 신청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2.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2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및 교체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하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문의 후 신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지원대상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2.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1. 지원대상

건설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2. 지원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승강기, 장애인 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노후된 LP가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신재생에너지 지원

1.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신청(☎031-260-4114)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2. 지원내용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저소득층 연탄보조

1. 지원대상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가구당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연 1회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한국광해관리공단 ☎02-3702-6500)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2. 지원내용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연2.8~3.6%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비율 70% 한도 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의 경우 5천 5백만원)

2.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연 3.3%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가구당 최대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억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하나) 신청(각 은행 콜센터 문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시·군·구로부터 저소득가구로 추천 받은 무주택 세대주

2.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연 2.0%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천 4백만원 이내,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원 이내, 기타지역 4천 9백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하나은행), 주민센터 신청
(국토교통부 ☎1599-0001)

보금자리론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연 4%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신청(☎1688-8114)

전세자금 보증

1. 지원대상

은행에서 전세자금, 월세보증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 중 부양 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3%로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17개 전 은행 신청(각 은행 콜센터 문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자금을 빌려 드립니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1. 지원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월 244만원)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생업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최대 5천만원(담보대출 기준)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자금 및 영업용 차량 구입자금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희망드림 체불임금 대부)

1.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지원내용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비용을 연 3%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근로자생활안정 자금 대부 (희망드림 생활자금 대부)

1. 지원대상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세금공제 전) 이하 근로자

2. 지원내용

근로자와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을
연 3%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희망드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 지원대상

4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 제외)

2. 지원내용

생계비를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근로자 월 최대 100만원, 실업자 최대 1,0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미소금융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신용등급이 1등급~ 7등급)인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지원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 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경우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 업종 및 주점 등 사치성·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1억5천만원, 기타 지역 1억원)
- 신청인 보유재산 대비 채무비율이 60%를 넘는 경우
- 미소금융중앙재단,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등

2.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 만원까지대출해 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청(☎1600-3500)

햇살론

1.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

2. 지원내용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근로자, 영세사업자 및 농림어업인에게 사용목적에 따라 연 12% 이내(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생계자금 1천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서민금융회사(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알려드립니다

◉ 햇살론 대환자금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바꿔드림론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국민행복기금 신청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새희망홀씨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지원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연 12% 이내의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각 은행 신청(한국이지론 ☎1644-1110)

채무의 고통을 덜어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1.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지원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50%를 감면(특수채무자는 60~7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개별신청접수는 마감되었으나 국민행복기금으로 문의 후 신청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1. 지원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과중 채무^{*}가 있는 사람
^{*} 갚을 능력을 넘어선 많은 채무

2. 지원내용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건을 조정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해소를 지원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 지원대상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내용

신체수발, 가사·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서비스를
월 24~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양곡할인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사랑의 그린PC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
(65세 이상), 다문화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2. 지원내용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통신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정비하여 보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한국정보화진흥원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 ☎1588-2670)

문화누리카드 (문화통합이용권)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음반·도서 구입,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드립니다.

- 가구당 연간 10만원 카드 1매, 청소년에게는 연간 5만원 카드 1매(가구당 최대 5매 신청 가능), 복지시설 거주자에게는 연간 5만원 카드 1매를 발급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사용안내→오프라인 가맹점, 온라인마켓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의 장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청소년 개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아이가 만 6세~19세이면 청소년 개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카드와 청소년카드를 합하여 가구당 최대 6매 까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지원대상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지역사회 주민

2. 지원내용

지역 실정에 맞춰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발달, 장애인·노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 정서 발달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취업·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업상태에 놓인 가구와 개인

1.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3.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4.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5.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제도

1.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일 37,512원~40,0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퇴사 후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I 유형·II 유형)

1. 지원대상

- I 유형 : 만 18세~64세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4인기준 244만원) 이하인 가구원, 장애인, 결혼이민자, 출소(예정)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II 유형 :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세~64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4인기준 407만원) 이하인 중장년층

2.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단계) 취업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형 : 15만원~25만원 지급 II 유형 : 10만원~20만원 지급
(2단계) 취업의욕, 취업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 ~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 (I 유형 : 자부담 면제, II 유형 : 10~20% 자부담) 2단계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
(3단계) 집중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00만원(취업 후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본 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으로 수급권을 잃은 경우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취업성공패키지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희망리본

1. 지원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해 자녀양육, 노인돌봄, 만성질환, 주택문제 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을 돋고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 교통비, 식비, 교육비 지원 등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활근로

1. 지원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 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247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지원대상

미취업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월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3. 신청방법 및 문의

일모아 홈페이지(www.ilmoa.go.kr)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조회한 후 관련기관에 신청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목돈 마련 및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

1. 지원대상

- I 유형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4인 기준 97만 8천원) 이상인 가구
 - II 유형 : 일하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 4인가구 기준 근로소득 146만 7천원 ~ 총소득 195만 6천원

2. 지원내용

- I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6만원)을 지원
- II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을 지원

지원 예시

- I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26만원 = 월 36만원
→ 3년 후 약 1,300만원(3인 가구 기준)
- II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약 720만원

3. 지원조건

- I 유형 :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II 유형 : 3년 동안 통장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4.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내일키움통장

1.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 5~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여, 만기 시 최대 1,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본인저축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15만원 = 월 35만원 → 3년간, 약 1,300만원

3. 지원조건

3년 이내 취업 혹은 창업하고, 자립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4.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자활장려금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

2. 지원내용

자활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근로장려금 (EITC)

1. 지원대상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 설계사, 방문판매원)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전년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단,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단독,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아래표 참조)
- 주택 요건 : '13.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등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 재산 요건 : '13.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지원내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13년 기준)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0만원	170만원	2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세무서 방문, 전화(ARS 1544-9944),
인터넷(www.eitc.go.kr) 신청(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자주 하는 질문

●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위의 4가지(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가 모두 충족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으신 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9월말 경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드립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1.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을 구하는 중인 실업자, 연 소득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2.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55%~75%(기초생활수급자는 훈련비 전액)를 지원합니다.
- 실업자의 경우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추가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취업이나 창업을 한 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 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여성 인턴십 등 취업 알선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13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문의 후 신청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II유형)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4인기준 407만원) 이하의 35~64세 중장년이면서,
-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취업자,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2. 지원내용

- 참여자가 1단계 수료 시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00~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자부담 10~20%)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1. 지원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정년연장 지원

1. 지원대상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3년 연장하면 1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1. 지원대상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이 된 근로자(18개월 이상 근무)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1년~3년 동안 재고용하면 6개월간, 3년 이상 재고용하면 1년간,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임금피크제 지원금

1. 지원대상

임금이 감소된 장년 근로자

유형	지원대상
정년연장형	정년이 56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0세 이후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소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2. 지원내용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유형	지원내용
정년연장형	최고임금의 80%(중소기업은 90%) 보다 감소된 임금을 감소된 때부터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급
재고용형	정년 전(55세 이후)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는 최고임금의 80%(중소기업은 90%)보다 낮아진 임금을, 정년 이후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는 최고임금의 70%(중소기업은 85%)보다 낮아진 임금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급
근로시간 단축형	최고임금의 70%보다 감소된 임금을 감소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장년 취업 인턴제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장년이며 미취업자

2. 지원내용

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및 아래 기관에 신청(☎1350)

관할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359
중부청	(사)인천벤처기업협회	032-260-2845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853-6681
경기	화성상공회의소(대)	031-350-7962
	수원상공회의소(보)	031-244-3454
	용인상공회의소(보)	031-8020-9564
강원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3-262-2095
부산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051-860-1321
창원	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1
울산	(주)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7-9491
대구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053-742-1775
포항	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2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070-8895-7742
광주	광주경영자총협회	062-654-3427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2
목포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여수	전남경영자총협회	061-725-7040
대전	중소기업중앙회	042-864-0901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시니어 창업지원

1. 지원대상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경력과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창업교육(80시간)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창업진흥원 신청(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장년 취업아카데미

1. 지원대상

전문분야에 직업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2. 지원내용

훈련기관에서 훈련받는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장년 취업아카데미를 수료한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에도 비용을 지원합니다.(중견인력재취원지원사업)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052-714-8274)

사회공헌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지원내용

사회공헌활동 일 4시간 이상 참여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43),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02-6369-8987) 신청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을 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산업현장 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수료 등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II유형)

1. 지원대상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

※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2. 지원내용

- 참여자가 1단계 수료 시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00~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자부담 10~20%)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1. 지원대상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합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2. 지원내용

- 인턴기간 동안 기업(사업주)에게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제조·생산직(전기·전자관련직 및 통신업 정보통신관련직) 등의 경우 취업청년에게 220만원(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대한상공회의소(인턴 ☎02-6050-3783, 기업 ☎02-6050-3787)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청년 취업 아카데미

1. 지원대상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졸업생(34세 이하)
- 일반고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가능

2. 지원내용

-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교육비 전액지원)
-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 052-714-8272)

일·학습 병행제

1. 지원대상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 병행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2. 지원내용

학습근로지원금 및 숙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후 신청(☎ 052-714-8223)



해외취업·인턴 지원

1. 지원대상

해외 취업 또는 인턴 등을 희망하는 청년

2. 지원내용

- 해외취업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K-Move 스쿨	• 15~34세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년간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결 • 교육비, 항공료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
해외취업 알선	•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희망자와 구인업체간 알선 지원
취업애로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연수 또는 알선 취업한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기준 월 244만원), 국가유공자 가구구성원, 장애인, 해외취업연수 고졸자과정 수료 후 취업한 자,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	• 18~34세 이하이고 8분위소득 (연 5,870만원) 이하 가구원, 단순 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지원

- 해외인턴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34세 청년 ※ 단, 경우에 따라 35세 이상도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턴 청년들에게 항공료, 체제비, 비자발급비용 등 지원(1인당 평균 700만원 내외 사업운영비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후 신청(☎1644-8000)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1. 지원대상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 최종학년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2. 지원내용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월 최대 3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취업사관학교

1.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내용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학업(검정고시) 지원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지원, 훈련생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훈련비 및 기숙비용 무료)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1644-8000](#))

아이를 낳는 것도 걱정,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출산·양육·교육 지원 및 아동·청소년 보호



1.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2.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3.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4.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5.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6.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7.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8.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돋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25만원) 이하이면서,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2.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시술구분	지급금액(1회)	지원횟수
체외 수정	신선배아 이식 최대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3회 *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선 배아로 4회까지 지원
	동결배아 이식 최대 60만원	3회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3회

알려드립니다

- **신선배아 이식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남성의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시킨 후 배양한 상태의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 **동결배아 이식이란?** 최초 이식하고 남은 배아를 초저온 상태에서 동결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희망하는 배란 주기에 해동하여 이식 할 수 있는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지원내용

표준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합니다.

*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을 유지하고 예방 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지원내용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임신 20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를 제공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부터 3개월간 엽산제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4인기준 326만원) 이하인 가구의 빈혈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2. 지원내용

- 개인별 처방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200%(4인기준 195만 6,960원~326만 1,600원)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1.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출산 진료비 (고운맘카드)

1.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를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임산부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우체국(☎1588-1300), 국민은행(☎1599-9999),
신한은행(☎1599-8000)에 카드 발급 신청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맘편한카드)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맘편한카드를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로 우편 송부 (☎1588-9955)

자주 하는 질문

●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맘편한카드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을 못하나요?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맘편한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1~3급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인당 60만원 (쌍둥이는 120만원, 유산·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인당 60만원 (쌍둥이는 120만원, 유산·사산 포함)
1~3급 여성장애인	아이 1인당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유산·사산 포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요양비(출산비) 지원

1. 지원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지원대상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지원내용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1355)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41만원) 이하인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산모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2주(12일)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 지원대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
이내의 미혼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제도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경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입양담당부서로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 지원내용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50~10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1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지원 예시

●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text{만원} \times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12만원($80\text{만원} \times 1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8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68만원 씩 1년 동안 총 816만원 ($68\text{만원} \times 12\text{개월}$)을 받고,
 -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44만원($12\text{만원} \times 12\text{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1. 지원대상

출산 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 :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유산·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언제 누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이후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1. 지원대상

30일 이상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1. 지원대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39만 4천원의 보육료·유아학비를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합니다.

연령	지원금액	이용시설	사용카드
만0세	39만 4천원		
만1세	34만 7천원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
만2세	28만 6천원		
만3~5세	22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 만 3~5세 아동에게는 어린이집, 유치원 상관없이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e-유치원시스템 고객지원센터 ☎1544-0079)

4. 참고사항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

1. 지원대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을 다음 달 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신청하고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 달 초 까지(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전 입소 당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달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 양육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출생아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 출생 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14.3.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 해야 하며, 이 경우 양육수당은 아동의 출생 월부터 지급됩니다.
※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월부터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돌봄 서비스

1. 지원대상

부모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른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영아종일제	만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월 40~75만원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간식,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보호	시간당 1,250~4,250원

※ 소득 또는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간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 단, 단기방학, 보육시설 휴원 등 보육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및 대여서비스, 체험 및 놀이공간 이용, 부모에 대한 육아상담(아이사랑 플래너) 및 교육 (키움뜰 부모교육), 양육관련 프로그램 제공,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 전국 72개소 운영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1577-0756)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19:30~익일07:30), 24시간보육(07:30~익일07:30), 휴일보육(공휴일)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일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지만 부모의 사정에 따라 긴급하게 짧은 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신청(일시보육콜센터 ☎1661-9361)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4인기준 326만원)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

2. 지원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25만원) 이하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4인기준 326만원) 이하인 가구의
저체중, 영양섭취가 불량한 만 6세(72개월) 이하 영유아

2. 지원내용

보충영양식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 영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국가예방접종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2. 지원내용

아래 13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국가예방접종 목록
1	수두
2	B형간염
3	페렴구균
4	폴리오(IPV)
5	BGC(피내용)
6	일본뇌염(사백신)
7	일본뇌염(생백신)
8	파상풍·디프테리아(Td)
9	b형 혜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10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11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12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1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3. 신청방법 및 문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신분증과 아기수첩(예방접종기록 확인용)을 가지고 방문(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영유아 건강검진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진단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건강 검진	○	○	○	○	○	○	○
구강 검진	-	-	○	-	○	○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발송되면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를 낳는 것도 걱정,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진)

1. 지원대상

만 3~6세 아동

2. 지원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아동의 눈수술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에 불소제제를 덮어 씌우고,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12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3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양아동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최대 월 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4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장애인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천원 (경증) 월 55만 1천원
장애인양아동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 참고(105p.)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 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

1. 지원대상

- 오후돌봄 :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초등학생 및 '13년도
오후 돌봄에 참여한 3~6학년 학생
- 저녁돌봄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구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2. 지원내용

돌봄유형에 따라 방과 후부터 최대 22:00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돌봅니다.

구분	돌봄시간	지원내용
오후 돌봄	방과 후 ~ 17:00	상담 및 생활지도, 학습지원, 간식·급식 제공
저녁 돌봄	17:00 ~ 22:00	

3. 신청방법 및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사도 교육청 문의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2. 지원내용

평일과 토요일 방과 후부터 최대 22:00시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돌봅니다.

구분		돌봄시간	지원내용
필수 운영	학기 중	14:00 ~ 19:00(필수운영 시간)	상담 및 생활지도, 학습지원, 간식·급식제공, 체험활동 등
	방학 중	12:00 ~ 17:00(필수운영 시간)	
추가 운영	저녁돌봄	수요에 따라 19:00 ~ 22:00	상담 및 생활지도, 학습지원, 간식·급식제공, 체험활동 등
	토요운영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문화체험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아동센터로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와 부모의 실직·파산·장애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나흘로 초등 4학년~중등 2학년 청소년

2. 지원내용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청소년을 돌봅니다.(자기주도 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부모교육, 급식 및 건강지원, 귀가지원 등)

※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는 1일 5시간, 토요일 포함 주 6일 운영 (방학 중에도 동일하게 운영)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3) 신청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고교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1544-9654)

방과 후 자유수강권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방과 후 학교 수강료(자녀 1인당 최대 연 60만원)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1544-9654)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급식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자녀의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합니다.(무상급식 지역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1544-9654)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2. 지원내용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38,700원
중학생	학용품비 연 52,600원, 부교재비 연 38,700원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학용품비 연 52,600만원, 교과서비 연 125,9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다양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및 다자녀 유형)

1. 지원대상

- I·II 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고 가구소득 8분위(월소득 589만원) 이하이며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인 학생
- 다자녀 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고 가구소득 8분위(월소득 589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14학년도 신입생 중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이며 셋째아이 이상인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중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학생(장애인은 70점 이상이고, 기초~1분위 학생들은 1회에 한하여 바로 이전 학기 70점까지 지원)

2. 지원내용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67만 5천원~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알려드립니다

- **I, II 유형이란?** I, II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이 다릅니다.
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고, II 유형은 대학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분위란?**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제도(1~10분위)입니다.
※ 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 가구로 인정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국가 근로장학금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재학생으로 가구소득 7분위 (월소득 489만원) 이하이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지원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교내 근무 시 시간당 8,000원, 교외근무 시 시간당 9,500원을 지급합니다.(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근무)

※ 단,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야간대학, 원격대학 학생 등)은 주당 40시간 이내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국가 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이공계)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또는 이공계열에 입학하여 매학기 일정 성적** 이상인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 만점(3.3이상/4.3만점)인 대학생

2. 지원내용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당 180만원 생활비 추가 지급)

* 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드림장학금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자
 -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5년 또는 '16년 졸업 예정자 중 일정 성적을 갖추었으며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고교 유형	성적인경 과목	석차(학점)	과목수	
			'15년 졸업예정자	'16년 졸업예정자
특목고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 이상 (1, 2학년성적)	5과목 이상 (1학년 성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영재고		학점 A- 이상		

2. 지원내용

- 신규 선발된 재학생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총 1,200만원의 학업 장려비를 지급합니다.
 - 기존 장학생이 해외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최대 4년까지의 대학 수업료(연간 최대 미화 5만\$)를 지급합니다.
- ※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5만\$ 이상 소요 시 최대 1만\$ 이내 학비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학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받고 취업한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1. 지원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만 35세 이하 대상자 중 가구소득 7분위(월소득 498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 상관 없음) 이하이고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인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12학점 이수한 학생

2. 지원내용

등록금과 생활비를 연 2.9% 저금리(변동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등록금 : 최소 50만원(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10만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 학기당 50만원~150만원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 (단, 한 학기에 1회 이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자주 하는 질문

● 든든학자금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취업하여 일정소득 ('14년 연소득 1,856만원) 이상 발생 시까지는 대출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다만, 상환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신청하여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만 55세 이하 대상자 중 가구소득 8분위(월소득 589만원) 이상이며 일정 성적* 이상인 자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12학점 이수한 자

2. 지원내용

등록금(50만원~9천만원) 및 생활비(학기당 최대 100만원)를 연 2.9% 저금리(고정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

순위	지원대상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추천자

2.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학교 우유급식

교육 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아동 급식 지원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

2. 지원내용

200ml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간 무료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소속 학교 신청(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컴퓨터 1세대당 1대, 인터넷통신비는 1세대당 1년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
go.kr) 신청(☎1544-9654)

1. 지원대상

저소득 계층 중 가정환경 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지원내용

단체급식소, 음식점,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또는
식품권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실종아동(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포함) 및 가족

2. 지원내용

실종·유괴예방 방문교육 및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전단 제작 지원을 비롯한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문의(☎02-777-0182)

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2. 지원내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각종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학대 사례관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서비스	학대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제공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아동 일시보호	학대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및 보호 아동의 생활·사회적응 지도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50여개소)에 상담 및 신고
(아동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91)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2. 지원내용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쉼터에 요청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2.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원 이내의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3만원까지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드림스타트

1. 지원대상

임산부 및 0세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과 가족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 보호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주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

1. 지원대상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 ~ 만 18세의 청소년

2. 지원내용

- 자아 존중감 회복 및 건전한 자아성장 도모,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 문제 상태·행동의 교정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로 문의 후 신청(☎031-333-1740)

지역 사회 청소년 임시보호소

1. 지원대상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

2. 지원내용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상담 및 교육, 긴급지원 서비스(성폭행, 자해, 폭력피해 등에 따른 의료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1388)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 지원대상

학교 부적응, 왕따, 도벽·거짓말, 자살(징후), 범죄, 탈선 등으로 인한 소년범, 약물·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

2. 지원내용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1388)

청소년 특별 지원

1. 지원대상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18세 위기청소년
(학업 중단,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1388)

아이를 낳는 것도 걱정,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만 13~24세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내용

학업복귀(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 사회진입(직업교육, 취업 연계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 1388(☎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홈페이지 (www.dodreamhaemil.or.kr) 신청

가출 청소년 보호쉼터

1. 지원대상

가출 청소년

2. 지원내용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및 보호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 1388(☎1388),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 성문화센터

1.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2. 지원내용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02-3144-1223)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성매매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1.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2. 지원내용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등 숙박교육 후 1년간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문의(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비 지원 (매체 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1.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2. 지원내용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조사를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지원(기술 치료 학교, 가족캠프,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일반 청소년 최대 30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 전수조사 후 청소년복지센터로 상담치료 대상자 명단을 송부(청소년전화 ☎1388)

WEE 클래스· 센터·스쿨

1. 지원대상

학생 및 학부모, 교사

2. 지원내용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Wee 클래스 : 자기표현·감수성 훈련프로그램, 진로탐색·소질계발 프로그램, 학습전략과 방법을 지원하는 학습 클리닉,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 Wee 센터 : 상담서비스와 학생의 잠재력, 학교 및 사회적응력, 글로벌 리더십 등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 Wee 스쿨 : 학교 교육 및 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등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Wee 홈페이지(www.wee.go.kr) 신청(☎02-2057-8701~7)

학생 안전강화 학교 지원

1. 지원대상

재개발지역·다세대밀집지역·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

2. 지원내용

- 경비인력 배치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 경비실, 출입 자동보안통제시스템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의 경쟁력을 키워 드립니다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1. 지원대상

만 16세~24세 청소년

2. 지원내용

국가간 청소년교류,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 청소년행사 국내 개최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교류센터로 문의 후 신청
(☎02-330-2892~8)

청소년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2. 지원내용

문화·예술·놀이 체험 프로그램 제공, 동아리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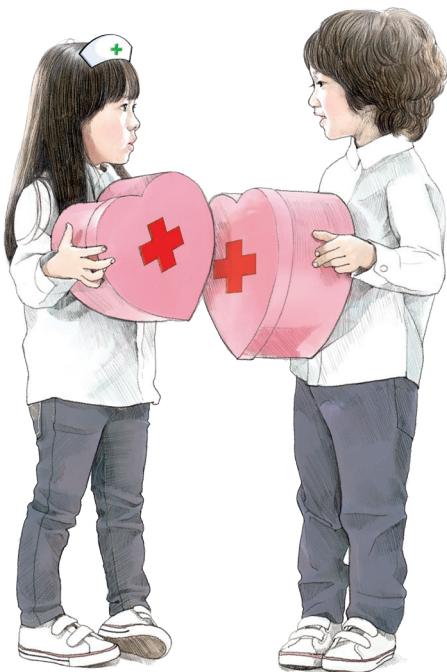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로 문의(☎02-2100-6260)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병을 앓거나 건강을 잃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

1.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2.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3.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5.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6.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가정경제를 보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

1.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제1형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건강검진 제도 참조(111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바우처(고운맘카드)로 지급(쌍둥이는 7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참조(63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77-100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기준 196만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본인부담금 상한제

1.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 본인부담금이 120~15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

2.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2014년)

소득수준*	기준금액
하위 10%	120만원
20~30%	150만원
40~50%	200만원
60~70%	250만원
80%	300만원
90%	400만원
100%	50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가 올해 납부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 수준을 10단계로 측정한 제도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에게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 지원대상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2. 지원내용

-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를 전부 부담했던 필수 검사·수술·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진료비의 5%(암, 심장병, 뇌질환), 또는 10%(희귀난치질환)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예시

- 대장암 환자 김모씨는 치료제인 '아바스틴'이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1천 6백 25만원에서 98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박모씨는 치료제인 '아피니토'가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2천 2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연도별 확대 계획〉

구분	'14년	'15년	'16년
약제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행위	MRI 등 영상검사	방사선 치료 수술행위	검사(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등
치료재료	-	심장·뇌수술 등 첨단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제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가호, 이송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천원~2천원, (2종)입원 10%, 외래 1천원~15%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제1형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 제도 참조(111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상동이는 7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참조(62p.)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금액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1600-0064) 신청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보상제

1.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매 30일간 1종은 2만원, 2종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원내용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노인틀니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본인부담금 상한제

1.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은 매 30일간 5만원, 2종은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원내용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노인틀니 제외,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적용 후 초과금액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본인부담 면제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부담면제자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교 재학중인 자,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등

2. 지원내용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천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선택 병·의원제

1. 지원대상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2.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4인기준 326만)인 저소득 가구
-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300%(4인기준 326~489만원)인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 중 심의를 통해
지원

2.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료율을 높여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드립니다.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1차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만 7천원 이하,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8만 6천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2.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최대 3년간 연 최대 120만원(비급여 항목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 최대 3년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폐암환자 :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정액)의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건소 문의 후 신청(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2. 지원내용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건소 문의 후 신청(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134종)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가구*

(산정특례 등록 후에 신청이 가능)

* 환자가구 : 소득(최저생계비 300%(4인기준 489만원) 미만), 재산(최고 재산액 300%(4인기준 2억 432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최저생계비 500%(4인기준 815만원)미만), 재산(최고재산액 500%(4인기준 3억 6,554만원) 미만)

2.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근육병 등 질환자에게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 구입비(만 18세 이상, 7개 대상질환) 등을 지원합니다.
-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원명령 결핵환자의료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지원대상

치료를 거부하거나 광범위한 약제 내성으로 인해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 결핵환자

2. 지원내용

- 입원치료 기간 동안 소요되는 입원비 및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결핵 관련 입원비 전액, 비급여 치료비의 일부(100~500만원) 지급
- 항결핵제 약제비 전액 지급
- 부양가족생계비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의료기관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제도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9~39세 세대주, 만 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국가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3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남성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검진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 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0~5세 영유아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장·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1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2차로 검진 ※ 검진주기 : 2년 1회(비사무직은 1년 1회)
국가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자궁경부암검진 : 3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구분	지원내용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40세 : 고지혈증, 복부미만 검사- 만 66세 : 노인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치매, 골다공증- 비취학 청소년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검사 등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장·발달 이상, 비만,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검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7회(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66~71개월)

3.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면 건강진단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1577-1000)
- 취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보건소에서 안내서 및 건강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발송하며, 건강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보건복지콜센터 ☎129)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립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중독관리센터) 이용

1. 지원대상

-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인터넷 게임·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
- 중독자 및 가족 등 지역주민

2. 지원내용

- 알코올·기타 중독자의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 가족교육, 가족모임 지원 등 중독자 가족을 지원합니다.
-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아동·청소년 예방교육, 직장인 음주 등 폐해 예방지원)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보건복지콜센터 ☎129)

정신건강증진 센터 이용

1. 지원대상

-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2. 지원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및 체계적 질환관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어린이·청소년, 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노인우울증 및 치매, 알코올 의존증, 자살위기자)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

2. 지원내용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 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 진료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재가암 관리

1. 지원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지원내용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건소 신청(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 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1577-1000)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 경감

1.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2.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를 경감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시죠?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

1.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2.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3.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4. 치매가 걱정될 때
5. 어르신의 눈과 치아건강이 걱정될 때
6.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7.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가 궁금할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중 대부분(90%)의 어르신께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은 10~20만원을 지급합니다.
 - ※ 대상 어르신 중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아 소득인정액 기준 70%에 가까운 분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1355)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어르신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여부를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제도는 '14.7.1일부터 시행되며 '14.7.25일에 첫 지급됩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만 60~64세 이신 분들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2. 지원내용

거주지역 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참여자 등록을 한 후 9개월 (월 36시간)간 환경미화, 공공 및 복지시설 업무 지원, 취약계층 돌봄, 학습강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월 20만원 지급)

알려드립니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지역 내 비영리단체, 기관 중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예)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 하는 질문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받는 급여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의 활동 및 여가·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지원대상

일반 노인

2. 지원내용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를 돋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음껏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이용

노후설계 서비스

1. 지원대상

베이비붐세대 등 중장년 및 노인(선정된 단체를 통한 지원)

2. 지원내용

복지관 등에서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직접 찾아가서 노후진단과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며,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의(☎02-6007-9188~9)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시범사업)

1. 지원대상

우울증상이 있는 등 사회관계 활성화가 필요한 독거노인

2. 지원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신청(☎1661-2129)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 지원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 강사, 장소, 재료비와 교재를 지원합니다.
- 문화나눔 봉사활동 소요비용(임차료, 식대 등)을 지원합니다.
- 동아리 활동 소요비용(전시회, 공연준비비, 강사비, 재료비, 장소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방문화원이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문의 후 신청
(☎ 02-704-2311)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고령층 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55세 이상

2. 지원내용

한글, 인터넷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의 기초 및 실용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의 후 신청(☎02-3660-2562)

온라인 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노인, 일반국민

2. 지원내용

평생교육사이트 ‘배움나라(www.estudy.or.kr)’에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웹디자인 등 83개 정보화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평생교육사이트 배움나라 홈페이지(www.estudy.or.kr)
회원가입 후 이용(배움나라 학습지원센터 ☎1588-0814)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시죠?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 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 6천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보건소(전국 254개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230여 개소 협약 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원센터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어르신의 눈과 치아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실명 예방

1.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정밀안검사(1차), 안압·굴절검사(2차) 등을 지원 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 검사,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지원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약 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어르신의 눈과 치아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틀니 지원

1. 지원대상

- 완전틀니 : 만 75세 이상이며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75세 이상이며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지원내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시술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의료급여 1종·2종 0%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임플란트 지원

1. 지원대상

만 7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분은 제외)
※ 2015.7월에는 만 70세 이상으로, 2016.7월에는 만 65세 이상
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무치악 환자란? 치아가 없는 상태의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환자입니다.

2. 지원내용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시술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적용개수 : 평생 2개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1.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4인기준 725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단기기사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와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자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방문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보호 시설에서 여가 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기사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2. 지원내용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 운동·영양관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 2회 생활교육 실시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시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독거노인 중 치매 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어르신

2. 지원내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 확인,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도와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지원대상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2. 지원내용

- 노인 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상담(전화·방문)
- 학대 피해 노인 상담 및 현장조사, 쉼터 운영
-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전국 25개소 운영

3. 신청방법 및 문의

노인학대 상담을 통해 지원(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가 궁금할 때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교통비	만 65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 1544-7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 1588-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2000
문화 활동비	만 65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재산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경감 -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경감 	국민건강 보험공단 (☎ 1577-1000)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 12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 1577-8866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



1.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2.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3.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4.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5.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6.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7.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8.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9.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10.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2. 지원내용

- 기초급여 :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지급)
- 부가급여 : 연령과 소득에 따라 2만원 ~ 28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14.7월 기준)

구분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28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7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14만원*)
차상위 초과	2만원	4만원

* 2010. 7.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경증장애인수당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4인기준 196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3~6급 장애인

2. 지원내용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시설수급자는 월 2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아동수당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6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2. 지원내용

구분	증증장애인수당	경증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입소자	월 7만원	월 2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출산한 1~3급 여성장애인(만 4개월 이상 유산 포함)

2. 지원내용

아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아동 입양양육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아동을 입양한 가정

2. 지원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62만 7천원, 경증 55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2세 미취학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종일반 39만 4천원)를 지급합니다.
(종일반, 방과 후, 만 3~5세 누리장애인보육)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2. 지원내용

방과 후에 하루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월 19만 7천원)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아동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장애인아동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36~8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장애인아동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을 받는 만 0~12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를
지급합니다.(지원단가 3,700원, 지원한도액 매월 22만 2천원)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야간보육(19:30~익일07:30), 24시간보육(07:30~익일07:30),
휴일보육(공휴일)

3. 신청방법 및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아동 양육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인 1~3급 중증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장애인아동돌봄비가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아동 1인당 연 480시간, 1회 2시간 이상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장애인자녀 교육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4인기준 212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1~3급 장애인 또는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38,700원 지급
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 학용품비 52,600원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29,500원, 학용품비 52,600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지원대상

1~3급 장애 대학생

2. 지원내용

장애학생의 대학 내 이동 및 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캠퍼스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학교에서 도우미를 선발하고 도우미에게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14년도 2,600명 활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문의 후 신청
(교육부 ☎ 044-203-6560)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지원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도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드립니다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 지원대상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에서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실시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2. 지원내용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준비금, 가계 보조수당, 훈련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4만원 지급
(입학 시 1회 한하여 지급)
- 훈련참여수당 : 1개월 및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재학생(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제외)에게 월 5만원 지급
- 가계보조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월 7만원 추가 지급
- 가족수당 : 가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명까지 1명당 3만원 지급
- 교통비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학생에게 월 5만원 지급
- 식비 : 통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에 의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자주 하는 질문

-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업능력개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훈련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담당 지도교사와 상담하세요.
-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고 수료한 후 다시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 양성과정(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고 표준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을 수료하거나 중도탈락한 훈련생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훈련받았던 동일 훈련직종으로의 재입학은 수료 후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맞춤훈련·사이버훈련·특별과정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참여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직종은 표준훈련시간 350시간(약 3개월), 750시간(약 6개월), 1,400시간(약 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1.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기업 연수를 받은 장애 대학생

2. 지원내용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1~2개월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기간 동안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지원내용

- 훈련기간(3~7주)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돋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훈련준비금 4만원 및 훈련수당 1일 1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재해 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고등학생) 기업연수)

1. 지원대상

고등학교(2학년·3학년·전공과)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 중 공단을 통해 기업 연수를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1~6개월 간 기업의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 1일 1만 7천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1588-1519)



일자리를 찾아 드립니다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전일제 일자리 지원	일 8시간, 주 5일	108만 9천원
복지 일자리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 등에서 공공형(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주 14시간, 월 56시간	29만 2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1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 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노인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68만 3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 및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이 취업과 창업,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4인기준 489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20세 이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자립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 한도 금액 : 무보증 가구당 최대 1천 2백만원, 보증 가구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담보 5천만원 이하
- 상환방법 : 5년 후 일시 상환 또는 5년간 분할 상환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1.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2. 지원내용

자동차 구입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단, 특수설비 필요 시 최대 1천 5백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지원인 지원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직장에서 장애인이 하는 일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일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00시간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는 시간당 5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월 최대 5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1588-151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 훈련, 일자리 탐색,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전국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적응훈련 기관 등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월별 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를 50명 미만 고용하면서 장애인고용 의무는 없으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지급단가(1인당 매월 15~5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또는 취업지원부 문의 후 신청(☎1588-1519)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작업지도원이 지도한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1588-1519)

보조공학기기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2.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중증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천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고용조건부로 지원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알려드립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2. 지원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비급여 항목은 제외)

- 1차 의료기관(의원 등)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병원, 대학병원 등) : 의료(요양)급여 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15%, 차상위계층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 지원(본인부담금 식대 20% 제외)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의료기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보험료 경감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2.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신청(☎1577-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인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재진단 대상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보장구 급여

1. 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의 80% 지급 (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 전액 (2종은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지급(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신청(☎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및 시각·청각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1~2급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 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상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보조기구센터
(구매상담 및 문의 ☎1670-5529)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51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인 만 18세 미만 입양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본인이 낸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아동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2.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발달재활 서비스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25만원)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2. 지원내용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 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언어발달 지원

1. 지원대상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10세 미만 비장애인아동

2. 지원내용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 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 가구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자녀 부모

2. 지원내용

과중한 돌봄에 부담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 16만원의 개인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을 6개월간 제공
(1회 당 50분, 월 4회 이상의 개별상담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을 지원합니다.

※ 전국 17개소 운영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도 및 시군구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보건복지콜센터 ☎ 129)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 지원대상

1~3급 중증장애인, 고령,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보조기구 대여·교육, 자가관리교육, 장애가족 지지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등 사회참여 지원, 방문, 한방 등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 113개 보건소에서 이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4세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 등급 판정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지원내용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380-470점	101만원(약 118시간)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2등급	320-379점	81만원(약 94시간)	8만 6천원 ~
3등급	260-319점	61만원(약 71시간)	234만 1천원
4등급	220-259점	41만원(약 47시간)	추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문의 후 신청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 하는 질문

◉ 한번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강기)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우선공급하여 1층에 우선배정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LH공사 문의 후 신청(LH공사 ☎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1.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가구당 최대 38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유형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중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상담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2. 지원내용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을 시군구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시군구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비용지원, 성년 후견 선임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2. 지원내용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실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지정된
공공후견 교육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을 월 1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2. 지원내용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면제, 법률상담, 형사사건 변호, 소송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전화로 문의(☎132)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1. 지원대상

사·청각장애인, 난청노인(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우선)

2. 지원내용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음성증폭기를 지원합니다.
- 난청노인에게는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1688-4596)
-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문의 후 신청(☎02-702-6080)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차량등록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지원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하여,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지원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 지원대상

1~3급(시각 4급은 지역에 따라 상이)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2.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세무과 문의(안전행정부 콜센터 ☎02-2100-3399)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상속세 상속 공제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국 526개소 운영('13년)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장애인복지관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2.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 205개소 운영('13년)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을 우선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체육시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 전국 28개소 운영('13년)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 심부름센터

1.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등

2. 지원내용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민원업무대행(관공서 등),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등 각종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합니다.

※ 전국 156개소 운영('13년)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문의(☎02-6925-1114)

수화통역센터

1.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 등

2. 지원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화통역, 일반인 수화 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전국 191개소 운영('13년)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농아인협회 문의(☎02-461-2261~2)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방송요금	사·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사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요금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등록장애인 및 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급~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급~6급)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 차로 : 요금 청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발급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 각 자차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훈감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요금	1~3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요금(주택용)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자자체별로 지원 	주민센터 (환경부 ☎ 1577-8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감면 (월 8천원 한도, 1~3급) 	한국전력(☎ 123)
문화 활동비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보건복지 콜센터 ☎ 129)
과태료	1~3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보건복지콜센터 ☎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을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생계비, 교육비, 취업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그 유족

2.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매월 15만 6천원 ~ 474만 2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지원대상

다친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2. 지원내용

상시 간호수당은 매월 210만원, 수시 간호수당은 매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무공 영예수당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이며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현
금액	25만원	24만 5천원	24만원	23만 5천원	23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중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

2. 지원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

- 3인 이하 가족 : 15~21만원
- 4인 이상 가족 : 20~26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지원대상

보상금을 지급받던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자 및 유족
사망 시 그 친족 중 상속인

2. 지원내용

대상에 따라 92만 7천원~306만 8천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이 때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의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을 가집니다.

알려드립니다

● 종결적 급부란?

보상금은 생존 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 후에는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슷한 금액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92만 7천원 ~ 306만 8천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92만 7천원 ~ 206만 1천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92만 7천원 ~ 150만 4천원
재일학도의용군	92만 7천원
보상금지급대상유족(보상금종결시)	92만 7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1. 지원대상

애국지사

2. 지원내용

훈장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3급	4급	5급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월지급금액	100만원	80만원	70만원	23만 5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독립유공자 등 영주 귀국 정착금

1. 지원대상

일제 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세대주

2. 지원내용

가족수에 따라 영주 귀국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4,500만원
- 2~3인 가구 : 5,500만원
- 4인 가구 이상 : 7,0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재해보상금

1. 지원대상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 지원내용

- 순직유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전투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신체검사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재해위로금

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포함)

2. 지원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종류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인명 피해 : 사망 · 실종 500만원, 부상 30만원
- 주택 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500만원, 일부 250만원
- 기타 재산 피해 : 20~5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6·25자녀 수당

1. 지원대상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
'98.1.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
^{*}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나 경찰

2. 지원내용

- 제적자녀(유족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자녀로 보상금을 받던 중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사람)에게 매월 106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 승계자녀(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 받다가 사망 후 순위가 변경된 사람)에게 매월 90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1. 지원대상

월남전 및 국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고도 장애 : 138만 1천원
 - 중등도 장애 : 107만 2천원
 - 경도 장애 : 86만 2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지원대상

월남전과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제대한 사람 중 고엽제로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사람 중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고도 장애 : 77만 5천원
- 중등도 장애 : 57만 2천원
- 경도 장애 : 37만 5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참전 명예 수당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7만원, 장제보조비*는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 장제보조비는 국가가 조성경비에 50% 미만으로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재가복지 지원

1. 지원대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을 돋고, 식사수발, 병원동행, 노인·의료용품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정도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 (1~5급)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2.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 그외 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40%(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 : 60%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1.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2. 지원내용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100%~60%)를 지원합니다.

(단, 식사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

- 국가유공상이자 100%, 그 외 대상자 60%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국가유공자 등 양로 지원

1. 지원대상

의지할 곳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2. 지원내용

의식주 제공, 생필품 제공, 주 2회 보훈병원 진료, 사망 시 묘지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양육 지원

1. 지원대상

의지할 곳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단, 독립유공자는 미성년 손자녀 포함)

2. 지원내용

성년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대학까지 교육을 지원하며
생활품, 취업알선 및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보훈병원 진료

1. 지원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제대군인 등

2.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 전액 지원(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12.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중 부상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20% 본인부담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를 통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옥창방석 등 3종의 보청구 무료 지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제대군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부담 진료비 30~60% 감면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대전보훈병원 ☎042-939-0114)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지원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2.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12년 7월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 중 부상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20%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 수권유족 1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 감면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정 위탁병원을 확인한 후,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1~7급 상이유공자, 1~14급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2. 지원내용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 1577-0606)

민영 교통시설 이용 (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1.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2. 지원내용

버스, 여객선, KTX 등 교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종, 대상자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지원대상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임차(전·월세)·개량(개조), 사업(창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자금 등을 연 2~3%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20년 상환)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에 문의 후 신청(☎1599-9999)

※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청에 문의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12.7.1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지원내용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지급합니다.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공무원·교원, 자격증 등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 연 25~50만원 지급
*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지정 교육기관 확인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수강시 장려금 월 4만원 지급
-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직업지도 프로그램 수강 시 최대 10만원의 장려금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제대군인

※ '12.7.1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지원내용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을 지원합니다.

- 보훈특별고용 :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공기업체 등은 1% 가산)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무고용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기능군무원 포함)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특별채용
* 일반직공무원 : 병호, 운전, 위생 등 일부 신설 직렬
- 가점취업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1.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퇴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2. 지원내용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지원내용

주택구입, 사업, 생활안정 등 비용을 연 3~4%의 저금리로 300~6,0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3~20년 상환)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에 문의 후 신청(☎1599-9999)

중장기 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1. 지원대상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결정한 사람

2. 지원내용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지부, 출장소, 지소) 및 보훈(지)청
문의 후 신청(☎1577-0606)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1.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 유공자 본인, 장애 등으로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보훈 대상자

2. 지원내용

대학원 장학금은 학기별 최대 115만원, 특수학교 장학금은 학기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1. 지원대상

중·고·대학 및 그 밖에 준하는 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자녀

2. 지원내용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학교운영 지원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청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교육청에 대상자로 통보되어 등록금 면제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국가보훈대상자등 학습보조비 지급

1. 지원대상

중·고·대학교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자녀는 고교까지), 특수 교육대상자로 유·초등, 중·고등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원, 고등학교 14만원(인문계)~18만원(전문계), 대학교 23만원, 특수학교 52만원~7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지원대상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복학 한 자 및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이하인 사람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지원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1577-0606)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위기가족, 특수대상을 지원하는 제도

1.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2.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3.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4. 남을 돋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5.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6.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형태나 상황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위기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
-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족(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경험한 사람 및 그 가족)

2.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1577-9337)

건강가정지원 센터 이용

1. 지원대상

가정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2. 지원내용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1577-9337)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 회복 지원

1. 지원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2. 지원내용

이혼상담, 교육, 가족캠프, 아동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위기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서울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599-3360),
부산 건강가정지원 센터(☎051-330-34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032-875-1361),
대전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89),
안산YMCA (☎031-410-3570),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

1. 지원대상

미혼모·부자 가족

2. 지원내용

상담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정서회복을 돋고,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병원비 및 양육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1577-9337)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4인기준 212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양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월 7만원의 양육비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 추가 지급
- 교육비 : 중등생 자녀 학용품비 연 5만원, 교통비 분기 86,400원
고교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전액, 학용품비 연 5만원, 교통비
분기 86,4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임대)

1.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LH공사 신청(☎1600-100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법률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1.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지원내용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 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대리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자녀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 청구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후 신청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2인기준 154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양육비 : 만 12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5만원의 양육비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 강좌 수강 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촉진수당 : 기초생활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 자산형성계좌 : 통장에 일정금액을 적립 시 최대 2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적립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4인기준 244만) 이하 가구는 20만원 이하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 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7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는 가구는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동 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맘편한카드)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맘편한카드를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로 우편 송부 (☎1588-9955)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 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지원내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의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1. 지원대상

무주택 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LH공사 문의 후 신청(☎1600-1004)

기초생활보장 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6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14p. 참조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복지지원 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고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다음의 국내 체류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례·연료비를 지원합니다. ↗ 17p. 참조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1. 지원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한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국민 포함)

2. 지원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수 있도록 한국어과정(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50시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혜택 : 이수자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 전국 304개 기관에서 운영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신청 (외국인종합지원센터 ☎ 1345)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한국으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2. 지원내용

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적응 및 문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가족부 문의 후 신청(☎02-2100-6280)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1. 지원대상

기초학습·진로지도 등이 필요한 다문화·탈북학생

2. 지원내용

대학의 근로 장학생을 활용하여 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진로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문의(☎1599-2000)

- 멘토는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에서 재학생 중 선발 (모집공고 및 멘토신청 4~5월)
- 멘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선발(3~4월)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2. 지원내용

모바일 활용 능력향상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집합교육 : 전국 다문화지원센터 40개소 방문 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 ☎ 02-3660-2552)

- 방문교육 : ☎ 1588-2670, ☎ 02-3660-2710으로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2. 지원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다누리콜센터 ☎ 1577-543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

2. 지원내용

-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다누리콜센터 ☎ 1577-5432)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결혼이민여성 인턴

1.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

2.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최대 6개월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 인턴 담당에게 문의 후 신청(☎02-2100-6204)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지원내용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과정당 2~3개월)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결혼이민여성

2. 지원내용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및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1577-1366, 1577-5432)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이주여성 보호 시설 이용

1.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2. 지원내용

일시 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1577-1366, 1577-543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1.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2. 지원내용

-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서비스 제공
- 육아에 필요한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만 3세~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가족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다누리콜센터 ☎1577-5432)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1.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성가정폭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후 신청(법률상담 ☎132)
- 가정폭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의 후 신청(☎1644-7077)
- 성폭력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문의 후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2. 지원내용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문의 후 신청(☎1366)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2.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합니다.(숙식 등 포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원스톱지원센터, 전담의료기관 등을 통한 응급키트 증거 채취를 지원합니다.
- 피해자 간병비 및 피해아동 등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신문 동행을 지원합니다.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을 도와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신고(☎1899-3075)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2.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문의 후 신청(☎13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1.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상담이 필요한 여성

2. 지원내용

-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드립니다.
-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결하여 피해여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긴급전화로 전화(☎1366)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찰·검사·약제·보조기·치과·수술 등 지원, 재활보조기 161개 품목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1일 41,680원 ~ 126,640원)
장해 급여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보상일시금 : 1급(평균임금 1,474일분)~14급(55일분)
유족 급여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
간병 급여	산업재해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 간병급여 : 38,240원(1일), 수시 간병급여 : 25,490원(1일)
기타	장기 상처나 병에 대한 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신청(☎1588-0075)

자주 하는 질문

-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대학 학자금 융자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가족,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보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 및 배우자(자녀 포함)

2. 지원내용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 중인 사람에게 학자금을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복지사업 (장학금)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가족,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보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 및 그 배우자(자녀 포함)

2.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가족 중 우선 지급 대상자, 산업 재해장해 1~9급자, 산업재해 근로자 창업지원 확정자

2. 지원내용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을 지급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지원대상

-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긴 병으로 장해가 생긴 근로자 중 65세 이상이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1~3급 결정자

2. 지원내용

- 경기케어센터 : (고령·중증)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강원케어센터 : (고령·무의탁 진폐)전문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산재근로자 심리상담 서비스

1. 지원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

2. 지원내용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지원대상

합병증 등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2. 지원내용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약제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지원대상

장해 제 1~12급 판정 또는 소견이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총 12개월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 지원대상

다치기 전의 직장에 복귀를 희망하는 모든 산업재해근로자, 산업 재해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 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가 난 사람 중 직업훈련 직종 및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경력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희망자

2. 지원내용

최대 1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최장 6년간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자녀(영유아)

2. 지원내용

월령(0~84개월)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0~11 개월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84 개월
금액 (매월)	20만원	17만 7천원	15만 6천원	12만 9천원	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2. 지원내용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77-1000)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2. 지원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최대 50%(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신청(☎1355)

농업인 안전 보험

1. 지원대상

만 15~84세로 영농·임업인을 보험대상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2. 지원내용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NH농협생명(☎1544-4000), LIG손해보험(☎1544-0114) 문의 후 신청

가사도우미

1.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2. 지원내용

가사도우미는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단위농협 문의 후 신청(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영농도우미

1. 지원대상

사고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

2.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합니다.(1일 인건비 6만원 중 4만 2천원(70%)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단위농협 문의 후 신청(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1. 지원대상

2ha(20,000㎡) 미만 농지 경작 농업인, 20톤 미만 어선 사용 어민,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농가

2. 지원내용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 만기된 경우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준금리에 1.5~9.6%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단위농협, 단위수협 문의(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

순위	대상자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추천자

2.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지원대상

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양수산부 ☎044-200-5733~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1. 지원대상

직접 또는 가족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 원양어선과 수산물 운송어선, 노후어선을 제외한 어선 소유자

2. 지원내용

- 어업활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시 재해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어선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수협 문의 후 신청(☎1588-1515)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2. 지원내용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보육시설)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농정부서 문의(농림축산식품부 ☎ 1577-1020)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1. 지원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 지원내용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농정부서 문의(농림축산식품부 ☎ 1577-1020)

남을 돋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해 드립니다.

의사상자 지원

1. 지원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지원내용

- 구조행위를 한 해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그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공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의사상자 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 129)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보장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 주민

2.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연금특례를 지원합니다.

※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는 60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이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생계·의료급여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로,
연금특례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으로 문의 후 신청

정착금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 주민

2. 지원내용

- 1인 기준 700만원의 기본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노령, 장애, 장기 질병에 대해 최대 1,540만원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돋는 장려금을 최대 2,44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생활안정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 주민

2. 지원내용

정착을 위한 상담도우미 지원, 의료·치과·출산·경조사 비용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신청(☎1577-6635)

주택알선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 주민

2. 지원내용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의 주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 주민

2. 지원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장학금, 학습지원, 진로 및 진학상담, 법률제도, IT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학력 인정은 통일부(☎02-2100-5785)로, 그 외 지원은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1577-6635)으로 문의 후 신청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초·중·고·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 주민

2. 지원내용

초·중·고·대학교 교육비와 대학 특례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취업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 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4년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1. 지원대상

노숙인

2. 지원내용

주거, 급식, 의료,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석면피해 구제급여

1. 지원대상

석면피해 인정자 및 석면피해 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법률에 의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2. 지원내용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문의 후 신청(☎032-590-4000)

사할린 한인 지원

1. 지원대상

영구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배우자, 장애인 자녀

2. 지원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생계비(매월 7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 신규 입국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을 지원합니다.
(신규 입국 시 1회, 2인기준 1천 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비용을 지급
-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 신규 입국시 항공료 실비 및 짐기 비품비 140만원을 지급합니다.(신규입국 시 1회)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원폭피해자 급여

1. 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및 유족

2. 지원내용

진료비,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장례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진료비	3,000엔까지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초과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매월 10만원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원을 지급)	매월 10만원
장례비	일본 정부에서 지원	150만원
건강검진	일본 정부에서 지원	연 1회

알려드립니다

- **피폭자 건강수첩이란?** 일본의 「원폭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인정한 원폭피해자에게 건강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문의 후 신청(☎02-3705-3705)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위안부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4천 3백만원, 월 지원금 1백 1만 2천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교통비, 간병인 지원(1인당 연간 한도액은 최대 1천 23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장제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여성가족부 문의 후 신청(☎02-2100-6000)

진폐근로자 보호

1. 지원대상

광업의 분진작업(폭파, 굴진, 착암, 채광작업, 광석운반, 석탄작업·분쇄)을 수행한 근로자

2. 지원내용

건강진단 비용, 자녀 장학금,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 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근로복지공단 문의 후 신청(☎1588-0075)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한센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한센피해자

2. 지원내용

의료비, 생활지원금(매월 15만원) 등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보건복지부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1.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2. 지원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1.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인 결혼이민여성과 자녀, 노숙자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지원내용

입원진료비와 외래수술비를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보건복지부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남들과 다른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지
생계를 유지 하기가 힘들 때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1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등	16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지원 제도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 ☎129	17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19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민센터, 지방공사, LH공사 ☎1600-1004	19
	공공임대주택 공급		20
	장기전세주택 임대		20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주민센터, LH공사 ☎1600-1004	21
	기존주택 매입임대		22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23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23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융자)	우리은행 ☎1588-5000	24
	주거환경 개선 지원(융자)	우리은행 ☎1588-5000, 국토교통부 ☎1599-0001	24
	주거 현물급여(집수리)	보건복지콜센터 ☎129	25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25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25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	26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26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031-260-4114	27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27
	저소득층 연탄보조	한국광해관리공단 ☎02-3702-6500	27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28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하나은행 콜센터	2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1599-0001	29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29
	전세자금 보증	각 은행 콜센터	29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보건복지콜센터 ☎129	30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30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31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32
	햇살론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33
	바꿔드림론		34
	사회망홀씨	한국이지론 ☎1644-1110	3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3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35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지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36
	양곡할인		36
	사랑의 그린PC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36
	문화누리카드(문화통합이용권)	보건복지콜센터 ☎129	3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38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실업급여 제도	고용센터 ☎1350	40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41
	희망리본	보건복지콜센터 ☎129	4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자활근로	보건복지콜센터 ☎129	43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일모아 홈페이지 www.ilmoa.go.kr	43
	희망키움통장		44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콜센터 ☎129	45
	자활강려금		45
	근로강려금(EITC)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46
	내일배움카드	고용센터 ☎1350	48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고용노동부 ☎13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49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취업성공 패키지(II 유형)		5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50
	경년연장 지원	고용센터 ☎1350	51
	경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51
	임금피크제 지원금		52
	장년 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1350	53
	시니어 창업지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54
	장년 취업아카데미	산업인력공단 ☎052-714-8274	54
	사회공헌 활동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43,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02-6369-8987	54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II 유형)	고용센터 ☎1350	55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1350	55
	청년 취업아카데미	산업인력공단 ☎052-714-8272	56
	일·학습병행제	산업인력공단 ☎052-714-8223	56
	해외취업·인턴 지원	산업인력공단 ☎1644-8000	57
	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1350	58
	취업사관학교	산업인력공단 ☎1644-8000	58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61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61
	영양플러스		62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의료급여)		62
	임신·출산진료비지원(고운맘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맘편한카드)	우리카드 ☎1588-9955	64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이지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65
	요양비(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6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1355	6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66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67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1350	68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	고용센터 ☎1350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고용노동부 ☎1350	69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70
	가정양육수당		71
	아이돌봄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2514	72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73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74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일시보육료 지원	일시보육콜센터 ☎1661-9361	7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비 지원		7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76
	영양플러스		76
	국가 예방접종		77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8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78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보건복지콜센터 ☎129	79
	취학전아동 단체 불소 도포		79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80
	입양아동지원		80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돌봄교실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	81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보건복지콜센터 ☎129	8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02-330-2831~3	82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고교학비 지원		83
	방과 후 자유수강권	주민센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1544-9654	83
	급식비 지원		8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84
	국가장학금(I, II 유형 및 다자녀 유형)		85
	국가근로장학금		86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이공계)		86
	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1599-2000	87
	든든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88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8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89
	학교보유급식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90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주민센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1544-9654	90
	아동급식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90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지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02-777-0182	91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아동학대신고 상담전화 ☎ 1577-1391	91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9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92
	드림스타트	92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93
	지역사회청소년 임시보호소	93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4	
	청소년특별지원	9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5	
	가출청소년 보호쉼터	청소년전화 ☎1388, 보건복지콜센터 ☎129	95
	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 청소년성문화센터 ☎02-3144-1223	95
	성매매 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여성긴급전화 ☎1366	96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비 지원	청소년전화 ☎1388	96
	WEE 클래스·센터·스쿨	Wee 홈페이지(www.wee.go.kr) ☎02-2057-8701~7	97
	학생안전강화 학교 지원	지역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97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청소년 국제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92~8	98
	청소년 활동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60	98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10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보건복지콜센터 ☎129	102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103
	4대 충증질환 보장성 강화	별도 신청없이 지원	104
	의료급여 제도		105
	본인부담금 보상제		106
	본인부담금 상한제		106
	본인부당 면제		107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07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선택병의원제		108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108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09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0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10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입원명령 결행환자 의료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10
	건강검진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11
	알코올상담센터(중독관리센터)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113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11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114
	재가암 관리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14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115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16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118
어르신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19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120
	노후설계 서비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007-9188~9	120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시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121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 ☎ 02-704-2311	121
	고령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02-3660-2562	122
	온라인 정보화교육	배움나라 학습지원센터 ☎1588-0814	122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 치료 관리비	보건복지콜센터 ☎129	123
	치매 견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24
어르신의 눈과 치아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실명 예방	보건복지콜센터 ☎129	125
	노인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26
	노인임플란트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27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28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28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129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가 궁금할 때	요금감면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등	130
장애인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콜센터 ☎129	132
	경증장애인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33
	장애인아동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33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34
	장애인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34
	장애인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35
	장애인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35
	장애인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36
	장애인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보건복지콜센터 ☎129	136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77	137
장애인의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자녀 교육비	보건복지콜센터 ☎129	137
	장애인대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부 ☎044-203-6560	138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38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보건복지콜센터 ☎129	139
	장애인대학생 기업연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4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41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고등학생 기업연수)	보건복지콜센터 ☎129	1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43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144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보건복지콜센터 ☎129	144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45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지
장애인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4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46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146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47
	보조공학기기 지원		147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의료비	보건복지콜센터 ☎129	148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9
	장애인 등록진단비		149
	장애인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50
	장애인보장구 급여		150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1670-5529	151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151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52
	발달재활서비스		152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5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15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5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54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15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콜센터 ☎129	156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LH공사 ☎1600-1004	156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15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157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15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158
	무료 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159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한국방송통신진흥원 ☎1688-4596 등	15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혜용	사업통상자원부 ☎1577-0900	16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콜센터 ☎129	160
장애인을 위한 세계혜택을 받고 싶을 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세무서 ☎126	16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안전행정부 ☎02-2100-3399	161
	상속세 상속 공제		16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세무서 ☎126	162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별도 신청없이 지원	162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63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콜센터 ☎129	163
	장애인 체육시설		164
	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164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164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요금감면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등	165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이지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168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68
	무공영예수당		169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69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70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71
	독립유공자 등 영주귀국 정착금		171
	재해보상금		172
	국가유공자 등 재해위로금		172
	6·25자녀수당		173
	고엽제환자2세수당		173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74
	참전명예수당		174
	재가복지지원		175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75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176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176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177	
	보훈병원진료	177	
	위탁병원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78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78	
	민영교통시설이용	179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국민은행 ☎ 1599-9999	179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180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181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교육비 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181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182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182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183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183
	국가보훈대상자 등 학습보조비지급		184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184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지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형태나 상황에 처한 가족 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186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		186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599-3360),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032-875-1361), 대전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89), 안산YMCA(☎031-410-3570),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187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18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교육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88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LH공사 ☎1600-1004	188
	한부모가족 주거지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보건복지콜센터 ☎129	189
	법률지원 (자녀양육비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189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9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맘편한카드)	우리카드 ☎1588-9955	191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92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LH공사 ☎1600-1004	192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192
	긴급복지지원 제도		193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345	193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02-2100-6280	194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 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94
	신 소외 계층 경로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02-3660-2552, 2710	195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195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195
	결혼이민여성 인턴	여성가족부 ☎02-2100-6204	196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1544-1199	19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96
	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1577-5432	19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197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198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198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신고 ☎1899-3075	199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20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200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 분	사 업 명	문 의 처	페이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201
	대학 학자금 응자		203
	복지사업(장학금)		20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04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04
	산재근로자 심리상담 서비스		205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20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0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06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206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양육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207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0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208
	농업인 안전 보험	NH농협생명 ☎1544-4000, LIG손해보험 ☎1544-0114	208
	가사도우미		208
	영농도우미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209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209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응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1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044-200-5773~4	2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수협은행 ☎1588-1515	211
남을 돋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211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211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12
	사회보장 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213
	정착금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13
	생활안정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214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14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215
	교육비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15
	취업 지원		215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16
	석면 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216
	사할린 한인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17
	원폭 피해자 급여	대한적십자 ☎02-3705-3705	218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02-2100-6000	219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19
	한센 피해자 지원		220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220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21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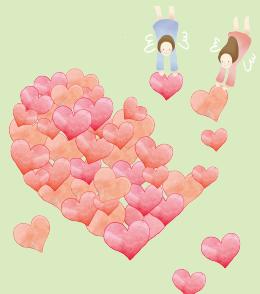
주요기관	연락처	주요기관	연락처	
ㄱ			ㅇ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2514	아동학대신고 상담	☎ 1577-1391	
고용노동부	☎ 1350	안전행정부	☎ 02-2100-3399	
국가보훈처	☎ 1577-060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외국인종합지원센터	☎ 1345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우리은행	☎ 1588-5000	
국민연금공단	☎ 1355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 5432	
국민은행	☎ 1599-9999	일시보육콜센터	☎ 1661-9361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ㅈ		
국토교통부	☎ 1599-0001	장애인보조기구 센터	☎ 1670-5529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정신건강 위기상담	☎ 1577-0199	
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ㅎ		
농림축산식품부	☎ 1577-1020	하나원	☎ 031-670-9323	
ㄷ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577-54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광해관리공단	☎ 02-3702-6500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02-6007-9188~9	
대한적십자	☎ 02-3705-3705	한국농아인협회	☎ 02-461-2261~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6925-1114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한국에너지관리공단	☎ 031-260-4114	
ㅂ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ㅅ			한국정보화진흥원	☎ 1588-2670
산업인력공단	☎ 1644-8000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 1397	ㄴ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 1899-3075	LH공사	☎ 1600-1004	
수협	☎ 1588-1515			
신용회복상담센터	☎ 1600-5500			
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 02-777-0182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지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센터

당신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Guide Book 2014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발행일| 2014년 7월
|디자인| (주)휠로컴

ISBN 979-11-952154-5-4 03330

